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4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2.

발 의 자 : 천준호 · 박상혁 · 김한규
문진석 · 조계원 · 박정현
김용만 · 주철현 · 서미화
문금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,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그러나 범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

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,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, 그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서 피해를 회복하게 할 필요가 큼

이에 ‘부패재산’ 및 ‘범죄피해재산’ 대상 범죄에 「대부업 등의 등록

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불법사금융 근절 및 범죄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조제3호 등).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
별표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0.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·제9호의 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범죄피해재산”이란 별표에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·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.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4.·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·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다. 「<u>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 제19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에 해당하는 죄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